의 안 번 호

779

【 울산광역시중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】

검 **토 보** 고

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 · 제출자 : 2010. 8. 25(수) · 중구청장
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0. 8. 30(월)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0. 9. 2(목)

2. 제안이유

가. 회계관계 공무원은 재정 보증 없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으며,

나.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회계관직·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그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조례가 실효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「울산광역시중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」폐지

⇒「울산광역시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」 대체 규정 신설

4. 근거법규 :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8조

관련 법령

[지방재정법]

제95조(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) ① 회계관계공무원(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)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지방재정법시행령]

제138조 (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)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회계관직·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. <개정 2007.4.5>

5. 폐지조례안 : 따로 붙임

6. 참고사항

가. 예산 조치사항: 해당없음

나. 규제사무 검토 : 해당없음

다. 관련부처 승인: 해당없음

라. 입법예고 사항 : 2010. 8. 2 ~ 8. 23(의견 없음)

7. 검토 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
 - ◆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 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로
 - ◆지방재정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개정되어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음.
- 이에따라
 - ◆본 조례는 실효(失效)되어 폐기하고
 - ◆구자체 새로운 『회계 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내부 규 정』을 만들어 시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.

울산광역시중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 779

제출년월일 : 2010. 8. 24.

제 출 자:총무국장

1. 폐지이유

「지방재정법」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회계관계 공무원은 재정보증 없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으며,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은 1천 만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회계관직·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그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조례는 실효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- ○「울산광역시중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」 폐지
 - ⇒ 「울산광역시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」 대체 규정 신설

3. 근거법규

가.「지방재정법」 제95조(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)

나.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138조(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)

4. 폐지조례안 : 따로 붙임

5. 참고사항

가. 예산 조치사항 : 해당없음

나. 규제사무 심의 : 해당없음

다. 관련부처 승인 : 해당없음

라. 입법예고 사항: 2010. 8. 2 ~ 8. 23(의견 없음)

울산광역시중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

울산광역시중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